

남양주도시공사 인권침해 구제 매뉴얼



■ 인권의 개념



「대한민국헌법」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
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인정하는
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

■ 인권 기본원칙



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**존엄과 가치**를 가지며,
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.
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**불가침의 기본적 인권**을
확인하고 이를 **보장**할 의무를 진다.

■ 인권침해란?



인간으로서 보장된 **기본권을 침해**당하거나,
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, 종교, 장애, 나이,
사회적 신분,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
차별행위*를 당한 경우

■ 차별행위의 종류



고용(모집, 채용, 승진, 퇴직 등 포함)과 관련하여,
재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,
교육시설 등에서의 **교육·훈련**이나 이용과 관련하여,
성희롱 행위와 관련하여

**특정한 사람을 우대·배제·구별하거나
불리하게 대우**하는 행위

■ 인권침해의 유형

차별받거나 존중받지 못했어요

성별, 나이, 장애, 고용형태 등을
이유로 부당하게 대우하거나
인격을 침해한 경우

- ❌ 부당한 업무 기회 제한
- ❌ 불합리한 시설 이용 제한
- ❌ 반복적인 폭언과 모욕
- ❌ 지속적인 따돌림·괴롭힘·무시
- ❌ 인격과 존엄성 침해 등

위협받거나 사생활이 침해됐어요

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입거나
개인정보나 사생활을
부당하게 침해한 경우

- ❌ 폭행·협박으로 인한 불안감
- ❌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
- ❌ 성희롱·성폭력
- ❌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·공개
- ❌ 동의없는 사생활 공개 등

■ 인권침해의 유형

일할 권리를 침해받았어요

부당 업무지시, 괴롭힘 등으로
정당하게 일할 권리가
침해된 경우

- ❌ 업무와 무관한 지시의 반복
- ❌ 안전하지 않은 근무환경
- ❌ 부당한 업무 배제
- ❌ 불공정한 차별 대우
- ❌ 기타 노동·안전권 침해 행위 등

이용할 권리를 침해받았어요

시설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
공정하게 이용할 권리가
침해된 경우

- ❌ 부당한 시설 이용 제한
- ❌ 이용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차별
- ❌ 모욕·비하 등 인격 침해
- ❌ 동의없는 개인정보 공개
- ❌ 안전한 이용 환경의 침해 등

■ 인권침해 구제절차

01

신고 및 상담

- 인권경영 전담부서에 신고(서면, 전화, 방문 상담 등)
- 인권 사이버 신고센터에 신고(공사 홈페이지)

02

접수 및 검토

- 전담부서 사건 접수 및 경영진 보고
- 사실관계 확인 등 신고사항 검토

03

조사 개시

- 신고인 및 관계자 조사
- 신고인에 대한 비밀 보장 및 신고에 따른 불이익 방지 조치

04

위원회 상정 및 심의·의결

- 인권경영위원회 안건 상정 및 구제절차 논의
- 사건 심의 및 의결 후 권고/기각/이송 등 신고자에 결정 통보

05

시정 및 후속 조치

- 신고자 신분 보장
-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시정조치

■ 인권침해 신고 창구



▶ 남양주도시공사 인권 전담부서 방문 및 전화 상담
경영기획실 인사성과부 / 인권경영 담당자 031-560-1032



▶ 남양주도시공사 인권 사이버 신고센터
<https://www.ncuc.or.kr/main/1391>



▶ 남양주도시공사 인권침해 신고 이메일
ncucHright.ncuc.or.kr



▶ 국가인권위원회 상담
(전화) 국번없이 1331 / (팩스) 02-2125-9811



▶ 국가인권위원회 인권e(상담/진정/조정)
<https://case.humanrights.go.kr>

모두의 인권이 **존중** 받을 때까지,

인권이 일상이 되는
남양주도시공사를
만들어가겠습니다.

